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이재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2.

발 의 자 : 이재강 · 허성무 · 최혁진
박지혜 · 김동아 · 백혜련
소병훈 · 김우영 · 안도걸
조계원 · 이기현 · 양부남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·도지사가 ‘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’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.

그런데 최근 미군 헬기의 급유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의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7조제2항제12호).

법률 제 호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주한미군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	제7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~ 11. (생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2. 주한미군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</u>
<u>12.</u> (생략)	<u>13.</u> (현행 제12호와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